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433
----------	-----

제출년월일 : 2001.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2000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902,507,426,740원, 세출결산액은 783,863,336,37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9,794,066,6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82,664,75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67,369,000원으로서 총 118,644,090,3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3.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따로붙임.

나.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따로붙임.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290-1229 / 전송(043)292-1525
의사와 과장 이상기 의사담당 김왕년 담당자 임재혁

문서번호 의사 81433 - 188

시행일자 2001. 6. 23.

(공개여부) 공 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1. 6. 23.	결재	
	번호	2697	공람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6. 23.)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29-1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12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
129-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129-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29-5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

붙임 : 의안 각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1-51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28일

충청북도교육청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0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902,507,426,740원, 세출결산액은 783,863,336,37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9,794,056,6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782,664,75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67,369,000원으로서 총 118,644,090,3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지 출 건 수 : 1건 ○ 지출결정액 : 28,469,000원 ○ 지 출 액 : 28,468,890원 ○ 잔 액 : 110원 ○ 지 출 사 항 - 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따른 구상금 28,468,890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안시 입법예고 실시(안 제3조)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행정심판, 5. 지방시험, 6. 정보화관련제도 7.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 입법예고의 예외(안 제4조) ○ 입법예고문 작성 및 입법예고 방법(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및 처리(안 제9조) ○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 간소화(안 제7조) - 공유재산심의범위 확대 · 필요할 경우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확정 심의 - 공유재산 심의 생략 규모 조문 정리 ·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및 대장가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 적용(안 제23조) - 일 반 재산평가액의 5% → 5%이상 - 공공용 재산평가액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가액의 1% → 1%이상 등으로 정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지역 분산효과(안 제23조)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 이전시 대부요율 인하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전세권 조항 신설(안 제25조의 2)